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5월 6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5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5월 15일

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행정안전국장 김 종 울

나. 제안이유

-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수요정책추진 필수 인력 증원 및 행정 수요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을 통한 효율적 조직운영 도모
- 일반직, 지도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조정으로 원활한 인력관리
- 전국(장애인)체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국체전추진단 존속기한 연장

다. 주요내용

○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

- 1,774명 → 1,795명(+21명)
 - 집행기관 : 1,746명 → 1,765명(+19명)
 - 의회사무기구 : 28명 → 30명(+2명)

○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조정(안 별표 2)

- 일반직
 - 5급 : 7%이내 → 6%이내(△1%)
 - 6급 : 23.8%이내 → 24.8%이내(+1%)
- 지도직
 - 지도관 : 9%이내 → 10%이내(+1%)
 - 지도사 : 91%이상 → 90%이상(△1%)

○ 직급별 정원표 조정(안 별표 3)

- 일반직 계 : 1,735명 → 1,755명(+20명)
 - 5급 : 90명 → 91명(+1명)
 - 6급 이하 : 1,625명 → 1,645명(+20명)
 - 전문경력관 : 8명 → 7명(△1명)
- 연구직 계 : 4명 → 5명(+1명)
 - 연구사 : 4명 → 5명(+1명)

○ 한시 정원표 조정(안 별표 4) : 전국체전추진단 존속기한 연장

- 존속기한 : 2020. 5. 31 → 2021. 5. 31(1년 연장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8조, 제29조 및 제30조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정 은

○ 본 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정원의 총수를 현행 1,774명에서 1,795명으로 21명(집행기관 19명, 의회사무기구 2명) 증원하고 일반직, 지도직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비율을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임.
- 세부 증원내역은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 8명, 아동학대 대응체계 시군구 이관에 따른 추진인력 8명, 노인 종합복지관 선산분관 개관에 따른 추진인력 3명, 의회 전문위원실 기능보강을 위한 추진인력 2명이며,
- 원활한 인력관리를 위해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의 정원채정기준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전국체전추진단 존속기한 연장과 더불어 한시정원 3명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임.

○ 검토 결과,

- 본 조례의 개정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고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최소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,
-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행정수요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원을 증원할 경우 재정상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므로, 정원 증원보다는 업무의 중요도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존 인력의 재배치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임.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(찬성 7, 반대 3)